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81 발의연월일: 2025. 3. 24.

발 의 자:이만희·구자근·서천호

김기웅 · 엄태영 · 강선영

서지영 · 조은희 · 권영진
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작물재배업·축산업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경기침체, 고물가·고환율 등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 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	제7조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		
감면)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	감면) ①		
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			
기업에 대해서는 <u>2025년 12월</u>	<u>2030년 12월</u>		
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	31일		
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			
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			
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			
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(제3호			
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			
한다)을 감면한다. 다만, 내국	i		
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			
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			
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			
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			
율을 적용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